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본주택 내 상담전화(☎ 1800-7640)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의 경우 상담자께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실 경우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해당사항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5.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0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양양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양양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원도 양양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신경자력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_	_	_	필요	_	_	_
소득 또는 자산기준	_	_	적용	_	적용	_	_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모바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0	0	0	0	0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0	0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ykhapt.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주택법」시행령	병 제73조제1항별표3)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기간	계약체결
일 정	2023.06.14.(수)	2023.06.15.(목)	2023.06.16(금)	2023.06.22.(목)	2023.06.23.(금) ~ 2023.06.26.(월)	2023.07.03.(월) ~ 2023.07.05.(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 소	■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견본주택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87-1)	견본주택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87-1)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5.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2023.06.08.)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도시계획과 - 17922호(2023.06.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57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9,958.00㎡

Ι

■ 주차대수 : 법정 305대, 계획 340대(세대당 1.2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지하1층 : 지하주차장 등 / 지하2층 : 기계실, 전기실 등), 지상 19~26층 5개동 총 279세대

「특별공급 125세대(일반[기관추천] 25세대, 다자녀가구 25세대, 신혼부부 47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2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 세대)

주택			주택형		주	택공급면적(m	ı²)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에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59.9957	59	59.9957	17.8405	77.8362	24.4742	102.3104	26.4310	48	4	4	8	1	4	21	27	2
		02	084.9760A	84A	84.9760	23.8268	108.8028	34.6647	143.4675	37.4360	118	11	11	21	3	10	56	62	6
		03	084.9702B	84B	84.9702	24.3537	109.3239	34.6623	143.9862	37.4334	41	4	4	7	1	3	19	22	2
	2023000218	04	084.9754C	84C	84.9754	24.1458	109.1212	34.6644	143.7856	37.4357	44	4	4	7	1	3	19	25	2
민영	2023000210	05	084.9761D	84D	84.9761	24.0571	109.0332	34.6647	143.6979	37.4360	25	2	2	4	-	2	10	15	1
주택		06	099.7653	99	99.7653	33.3161	133.0814	40.6976	173.7790	43.9514	1	-	-	-	-	-		1	-
		07	119.8997	119	119.8997	36.9648	156.8645	48.9112	205.7757	52.8216	1	-	-	-	-	-		1	-
		08	129.9428	129	129.9428	39.9801	169.9229	53.0082	222.9311	57.2460	1	-	-	-	-	1		1	-
	합 계										279	25	25	47	6	22	125	154	13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 조정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실, 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세대)

					77 7 04				∃(10%)			중도금	(60%)			잔금
주택형 (약식)	공 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공급금액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0%)
,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Я	계약시	계약후 30일내	2024.01.19.	2024.05.17.	2024.09.20.	2025.01.20.	2025.04.18.	2025.08.22.	입주시
		2층	2	34,330,000	225,570,000	-	259,900,000	10,000,000	15,990,000	25,990,000	25,990,000	25,990,000	25,990,000	25,990,000	25,990,000	77,970,000
		3층	2	35,070,000	230,430,000	_	265,500,000	10,000,000	1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26,550,000	79,650,000
		4층	2	35,460,000	232,940,000	-	268,400,000	10,000,000	16,840,000	26,840,000	26,840,000	26,840,000	26,840,000	26,840,000	26,840,000	80,520,000
59	48	5 ~ 10층	12	36,240,000	238,060,000	-	274,300,000	10,000,000	1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27,430,000	82,290,000
		11 ~ 15층	10	37,320,000	245,180,000	-	282,500,000	10,000,000	1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84,750,000
		16 ~ 20층	10	39,180,000	257,420,000	_	296,600,000	10,000,000	19,660,000	29,660,000	29,660,000	29,660,000	29,660,000	29,660,000	29,660,000	88,980,000
		21 ~ 25층	10	40,300,000	264,800,000	-	305,100,000	10,000,000	20,510,000	30,510,000	30,510,000	30,510,000	30,510,000	30,510,000	30,510,000	91,530,000
84A	118	2층	6	47,990,000	315,310,000	-	363,300,000	10,000,000	26,330,000	36,330,000	36,330,000	36,330,000	36,330,000	36,330,000	36,330,000	108,990,000

		3층	6	49,040,000	322,160,000	-	371,200,000	10,000,000	2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111,360,000
		4층	6	49,560,000	325,640,000	_	375,200,000	10,000,000	2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112,560,000
		5 ~ 10층	36	50,660,000	332,840,000	_	383,500,000	10,000,000	2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115,050,000
		11 ~ 15층	30	52,170,000	342,730,000	-	394,900,000	10,000,000	2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39,490,000	118,470,000
		16 ~ 20층	26	54,780,000	359,920,000	-	414,700,000	10,000,000	31,470,000	41,470,000	41,470,000	41,470,000	41,470,000	41,470,000	41,470,000	124,410,000
		21 ~ 24층	8	56,340,000	370,160,000	_	426,500,000	10,000,000	3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127,950,000
		2층	2	47,740,000	313,660,000	_	361,400,000	10,000,000	2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36,140,000	108,420,000
		3층	2	48,780,000	320,520,000	-	369,300,000	10,000,000	2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36,930,000	110,790,000
		4층	2	49,300,000	323,900,000	-	373,200,000	10,000,000	27,320,000	37,320,000	37,320,000	37,320,000	37,320,000	37,320,000	37,320,000	111,960,000
84B	41	5 ~ 10층	12	50,380,000	331,020,000	-	381,400,000	10,000,000	28,140,000	38,140,000	38,140,000	38,140,000	38,140,000	38,140,000	38,140,000	114,420,000
		11 ~ 15층	10	51,890,000	340,910,000	-	392,800,000	10,000,000	2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39,280,000	117,840,000
		16 ~ 20층	8	54,490,000	358,010,000	-	412,500,000	10,000,000	3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41,250,000	123,750,000
		21 ~ 25층	5	56,050,000	368,250,000	-	424,300,000	10,000,000	3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127,290,000
		2층	2	47,410,000	311,490,000	-	358,900,000	10,000,000	2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107,670,000
		3층	2	48,440,000	318,260,000	-	366,700,000	10,000,000	2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110,010,000
		4층	2	48,960,000	321,640,000	-	370,600,000	10,000,000	2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111,180,000
84C	44	5 ~ 10층	12	50,040,000	328,760,000	-	378,800,000	10,000,000	2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37,880,000	113,640,000
		11 ~ 15층	10	51,530,000	338,570,000	ı	390,100,000	10,000,000	2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39,010,000	117,030,000
		16 ~ 20층	10	54,110,000	355,490,000	ı	409,600,000	10,000,000	30,960,000	40,960,000	40,960,000	40,960,000	40,960,000	40,960,000	40,960,000	122,880,000
		21 ~ 25층	6	55,670,000	365,730,000	ı	421,400,000	10,000,000	32,140,000	42,140,000	42,140,000	42,140,000	42,140,000	42,140,000	42,140,000	126,420,000
		2층	1	48,570,000	319,130,000	ı	367,700,000	10,000,000	2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36,770,000	110,310,000
		3층	1	49,630,000	326,070,000	I	375,700,000	10,000,000	2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37,570,000	112,710,000
		4층	1	50,160,000	329,540,000	ı	379,700,000	10,000,000	27,970,000	37,970,000	37,970,000	37,970,000	37,970,000	37,970,000	37,970,000	113,910,000
84D	25	5 ~ 10층	6	51,270,000	336,830,000	ı	388,100,000	10,000,000	28,810,000	38,810,000	38,810,000	38,810,000	38,810,000	38,810,000	38,810,000	116,430,000
		11 ~ 15층	5	52,800,000	346,900,000	ı	399,700,000	10,000,000	2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39,970,000	119,910,000
		16 ~ 20층	5	55,440,000	364,260,000	I	419,700,000	10,000,000	3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125,910,000
		21 ~ 26층	6	57,030,000	374,670,000	ı	431,700,000	10,000,000	33,170,000	43,170,000	43,170,000	43,170,000	43,170,000	43,170,000	43,170,000	129,510,000
99	1	26층	1	90,440,000	594,160,000	59,416,000	744,016,000	10,000,000	64,401,600	74,401,600	74,401,600	74,401,600	74,401,600	74,401,600	74,401,600	223,204,800
119	1	26층	1	106,050,000	696,750,000	69,675,000	872,475,000	10,000,000	77,247,500	87,247,500	87,247,500	87,247,500	87,247,500	87,247,500	87,247,500	261,742,500
129	1	25층	1	115,470,000	758,630,000	75,863,000	949,963,000	10,000,000	84,996,300	94,996,300	94,996,300	94,996,300	94,996,300	94,996,300	94,996,300	284,988,9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
- 상기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에서 적 의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모집공고상에 표기된 면적은 사업계획증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 표의 '주택형(전용면적기준)'으로 청약하십시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홈페이지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면적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 중 벽체 공유면적을 제외한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로비 등)은 해당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 세대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발코니확장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하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친상층입니다
- 각 주택형의 세대별 1차 계약금 납입 이후 2차 계약금 납부일은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일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형(99,119,129)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 도 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일정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납(중도금 또는 잔금) 및 자납(중도금)할인 : 각 회차별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자가 선납 또는 자납하는 경우 일정 이율을 적용하여 할인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10%), 중도금(1~6회차 60%), 잔금(3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지연이자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 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 [종합토지세(분리과세 기준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홍보제작물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	84A	84B	84C	84D	99	119	129	합 계
	국가유공자	1	2	1	1	_	_	_	_	5
01111/2121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1	1	1	-	-	_	6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3	1	1	1	-	-	-	6
7208	중소기업 근로자	1	2	-	1	-	-	-	-	4
	장애인	1	2	1	-	-	-	-	-	4
다자니	크가구 특별공급	4	11	4	4	2	-	-	-	25
 신혼	부부 특별공급	8	21	7	7	4	-	-	-	47
노부모	고부양 특별공급	1	3	1	1	-	-	-	-	6
생애최초 특별공급		4	10	3	3	2	-	_	-	22
	합 계	21	56	19	19	10	0	0	0	125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 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자격요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자격제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 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000 FL CI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_	400만원	400만원1,000만원500만원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한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청약자격

요건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 복지과
-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등 : 국가보훈처 강원동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양양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884	8418	기준	점수	-\frac{1}{2}
계	10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4명	35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30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네ㅜ(3)	3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1년 이상 ~ 5년 미만	10	↑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 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강원도)에 입주자모집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
		1년 이상 ~ 5년 미만	5	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47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3.06.08.	해당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양군)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ㆍ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양군)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 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3년 적용)

	2	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Επο	7.2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소득	(기준소득, 5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기준 구분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상위소득, 2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 초과 / 자산기준 충족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추첨제, 3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 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 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장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가액은 해당 /	네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3억3,100만원 이하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토지	단, 아래 경우는 제9 - 「농지법」제2조제 - 「초지법」제2조7 - 공부상 도로, 구기 - 종중소유 토지(건축	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H,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마·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파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는 경우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6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양군)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나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양군 및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약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 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3.06.08.	해당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 월평균소득 기준 (202 3	3년 적용)	
	<u>56π8</u>	TE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기분 구분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추첨제 (30%)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 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임
-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서	네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3억3,100만원 이하		7 5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토지	단, 아래 경우는 제오 - 「농지법」제2조제 - 「초지법」제2조저 - 공부상 도로, 구거 - 종중소유 토지(건축	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	경우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

- 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양군)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Ш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통장효력이 상실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전용 60㎡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의 청약예치 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 外 지역 (양양군, 강원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quot;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한다.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 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 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점·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주민등록표등본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기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① 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② 부양 가족수	35	1명	10	5명	30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2명	15	6명이상	35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3명	20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8	20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IOLETI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 청약통장 -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718712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근디옷 8기 시에 사용 계단요)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 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 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IV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06.14(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87-1)
일반공급	1순위	2023.06.15.(목)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2순위	2023.06.16.(금) 09:00~17:30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 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 서 ④KB모바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u>청약자가 원할 경우</u>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u>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u>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 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ㆍ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 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OLHI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일반 공급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0 11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	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신청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 한합니다.)

- ※ 금회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약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총별 공급 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신청자격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 ※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신청 서(별도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 자격입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③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3.06.22.(목) • 확인방법	• 일시 - 2023.07.03.(월)~2023.07.05.(수) (10:00~16:00)
일반공급	1순위	TC _01_C600/01 /12_T4	• 장소 - 견본주택
200	2순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전문구목 (장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87-1)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u>±</u>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	l간	2023.06.22. (목) ~ 2023.07.01. (토) (10일간)
인터	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23.06.22.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 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전용면적 85㎡ 초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양군 거주신청자가 강원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세대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2018 05 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 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핵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 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청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 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 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시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변경시 통보하여야 함.
-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예비입주자의 서류검수,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은 향후 사업주체에서 개별 통보 예정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제출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장 소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2023.06.23.(금) ~ 2023.06.26.(월) 4일간 (10:00 ~ 17:00)	- 견본주택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87-1		

※ 코로나바이러스 강염증(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제출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예정)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신청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 예비입주자는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 류	유 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정보취약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장애인,제외)
계층 견본주택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본인발급용 필수) • 본인사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접수 불가
특별공급 접수시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사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생략

	서 류	유 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구인당학교당은 (전세포함 <i>)</i>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공통서류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 내역
		0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해외체류 증빙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①, ②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는 생업사정 불인정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사실 증빙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하여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0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하여 발급
당첨자 / 기점제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가점제 예비입주자		0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에이ㅂㅜ시		0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확인 ※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서 류	유 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하여 발급
		0	ᆕᅁᆒᆁᄌᄜᆚ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경우
		0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0	기그런게ㅎㅎ시 (ㅎ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계속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소득 및 가구원수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신혼부부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
		0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서 류	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구한당목표조는 (전세포함 <i>)</i>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하여 발급
노부모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부양		0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특별공급		0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0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
		0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제3자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서 류	유 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5112101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0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신청시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C A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 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 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 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산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1개월 미만자는 고용(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전년도 재무재표 ③ 전전년도 원천징수이행 명세서 ④ 전전년도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① 위촉 또는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해당직장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신고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원	① 접수장소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생애최초	자격 입증서류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특별공급	33.471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해당직장
입증서류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해당직장/세무서
	사업소득세 납부자)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③ 애링즉경/제 구 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주민센터

Ⅷ 계약체결 일정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체결 기간	장 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3.07.03.(월) ~ 2023.07.05.(수) 3일간 (10:00 ~ 16:00)	견본주택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87-1

-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수납은 할 수 없습니다.
-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378801-01-191977	한국자산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계약자 성명 예시) 1010201홍길동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납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류유형 구비 서류		NO DI COLLIN			
一 正	필수	해당자	구미 서뉴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0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본인 계약 시	0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CII DI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아파트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대리 계약 시	0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청약 시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의 선정을 제한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 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발코니 확장 계약시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 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 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위탁자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 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시 중도금대출이자 대납 조건으로 위탁자 및 시공사가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아파트는 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의 잘목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 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대금	우리은행	1005-604-514650	금호건설 주식회사	

- ※ 유상옵션(별도 품목 계약)은 시행사(위탁자) 및 신탁사(수탁자)와는 무관합니다.
- ※ 유상옵션(추가 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류입금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일에 상기 지정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01동 1004호 홍길동:1011004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1020201홍길순)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시행사(위탁자) 및 신탁사(수탁자)와 관계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시공사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유상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등이 부과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과 관련된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유상옵션을 함께 전시하였으며,기본으로 제공되는 가구와 가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시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와 관련된 옵션 선택시와 미선택시 차이에 의한 견본주택과의 공간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시 기타 선택형을 우선 선택하여야 선택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선택사항에 따라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주택형에 따라 설치위치, 디자인, 크기, 용량, 사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금액은 옵션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전. 가구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될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단,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품목인 일반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용 에어컨 냉매박스는 플라스틱 마감카바로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냉매박스 위치 및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129타입 선택2안 실외기는 실외기실 1대, 테라스 1대 총 2대가 설치되며 장비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상판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 선택시에도 주방 가스 공급용 배관이 설치되며, 상부장 하부에 가스 차단기 설치 후 캡마감 처리됨.
-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선택 시 제품 전면부에 주방 가구마감과 동일한 색상의 가구판넬이 부착됩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시 매립호스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비스포크, 오브제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비스포크, 오브제 패키지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마감재품목은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상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옵션금액	납부일정			
구분	품목	제품명	해당 타입		선택안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0% (2024.01.19.)	잔금 80% (입주예정일)	비고
				선택1	거실+침실1 (2)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59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0.44 0.45	선택1	거실+주방+침실1 (3)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84A, 84D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	8,400,000	840,000	840,000	6,720,000	
			0.40	선택1	거실+침실1 (2)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1	시스템 에어컨	삼성전자	84B, 84C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99	선택1	거실+주방+침실1 (3)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	8,700,000	870,000	870,000	6,960,000	
			119	선택1	거실+주방+침실1 (3)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선택1	거실+주방+침실1 (3)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침실5 (7)	10,100,000	1,010,000	1,010,000	8,080,000	
		GLASS 4: RF60B91R2AP 3: RQ33A74E1AP	4: RF60B91R2AP	선택1	삼성 Bespoke (4+3도어)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2	냉장고+김치냉장고 ·	4: BC4S1AA1		선택2	LG Objet (4+3도어)	6,800,000	680,000	680,000	5,440,000	
3	식기세척기	DW60T7065SS	전타입		삼성	880,000	88,000	88,000	704,000	
	12.100 12.1	DIB22SB			LG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4	전기오븐	EON-B450M	- 전타입·	일반 (SK매직)	330,000	33,000	33,000	264,000		
4	선기포는	EON-B401SA	246	고급 (SK매직)	660,000	66,000	66,000	528,000		
5	하이브리드쿡탑	CIRS-FL301FB-E	저디이	인덕션3 (쿠쿠)	550,000	55,000	55,000	440,000		
5	5 000=4=46	CIHR-D302FB	- 전타입	인덕션2+하이라이트1 (쿠쿠)	440,000	44,000	44,000	352,000		
			59	1FIX + 2 DOOR 3연동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1.71	T-0	84A, 84B, 84C	1FIX + 2 DOOR 3연동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6	현관	중문	84D	1FIX + 1 DOOR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99	1FIX + 2 DOOR 3연동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119, 129	1FIX + 2 DOOR 3연동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59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84A, 84D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7	III C	ELOI	84B, 84C	기사·포바·버드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7	바닥	타일	99	거실+주방+복도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129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59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0	OUTLI I	N.C. I. E.	84B, 84C	주방 벽, 상판 마감재 / 상부장 하부 라인조명 포함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8	엔지니(게느스논 -	엔지니어드스톤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129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59	거실 우물천장+간접조명 거실 벽 조명 단천장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거실패키지 ① 아트월 대형타일(600*1200) ② 복도 시트판넬 ③ 픽처레일(소파뒷벽+복도판넬부위)		거실 우물천장+간접조명 거실 벽 조명 단천장 주방 우물천장 신설+간접조명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9	② 복도 시트판넬 ③ 픽처레일(소파			거실 우물천장+간접조명 거실 벽 조명 단천장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④ 우물천장+간접	소병	99	거실 우물천장+간접조명 거실 벽 조명 단천장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기를 그 모음 한편증 주방 우물천장 신설+간접조명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10	침실4+팬트	리+장식장	84A, 84D	침실4 : 슬라이딩도어 팬트리 : 시스템선반, 가구도어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카페형 장식장 : 장식장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라인조명)					
		99	장식장(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라인조명)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주방장식 수납장	119	장식장(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라인조명)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129	장식장(라인조명)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IX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미 기재된 내용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택형 신청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함.)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예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명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는 향후 시공사[금호건설(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견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 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 인근에 도로 등 기타시설이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진동, 대기질환경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매수인은 본건 아파트가 분묘가시권 내에 속해있으며, 인근 축사로 인하여 악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민원제 기. 분양계약 해지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교통성 검토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대지면적 및 대지 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작성)

일반사항 (공통)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단지 서측(폭 10m) 및 북측(폭 6m) 도시계획도로 등의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실시 주체 변경 및 형태 변경 또는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서,북측 도시계획도로가 개통하기 전 단지와 레벨차이에 의해 옹벽이나 별도 구조물이 노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통 될 시 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등 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허가(사업계획승인,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등) 내용에 따라 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이 준공되기 전 토지의 용도 및 조성계획 전반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히, 단지에 접해 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보행로 등)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로 등)에 따라 인접한 단지 시 설 등의 계획레벨,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지 주출입구 및 보행자/비상도로 출입구의 동선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와 인접한 기반시설(도로, 보행로 등)의 레벨차이로 인해 조경석 쌓기 및 옹벽이 변경 및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저층세대의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에 인접한 동의 경우 주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안전매트 설치구간의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에는 수목 식재가 배제됨. 이에 따라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추후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 및 교통체증이 심화될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계약 체결일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옹벽의 종류 및 높이, 이격거리 등이 변경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됙 수 있음 • 단지 조경, 경관 조명, 단지 조명 및 사인,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지하 1층에 캐비닛형의 지하 세대창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별 세대창고 배정 시 일부 세대는 다른 동 지하에 위치한 세대창고에 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 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팜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홍보물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홈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 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 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셔야 함.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됨. • 당 단지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기관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 학교관련 유의사항 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성 개선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은 계약자 단지 설계 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외부로고사인물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녹지, 도로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상황과 다르 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으로 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기타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음.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화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주변의 향후 신규 개발계획 및 도시시설물 설치, 도로 등의 신설 및 확장, 변경 등으로 인해 본 단지 준공 시 인접 세대의 향, 조망,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향, 조망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출입구, 각종 공원, 도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야간 조명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변 현황및 현장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시설물(문주, 재활용집하장, DA, 단지 경계부 옹벽 등), 조경(포장 및 식재의 수종 및 수량, 단지 경계의 높이 차이, 각종 옹벽 및 자연석 쌓기 구간 등) 및 마감재는 본 시 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현장여건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수량, 위치 및 크기, 디자인 등이 개선 및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단지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와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이와 같은 변경사항에 따른 설계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음.
- 본 단지와 외부 도로 및 인접부지 사이의 경계(휀스), 옹벽(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 단지 출입구 계획상의 차선, 차단기 등 세부사항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 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위치, 높이, 재질 및 형태, 색상 등이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전기, 도시가스 공급 및 오수처리(지하)를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그 시설의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등에 의하여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규모 등은 기반시설 공급업체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동선,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마감재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및 급배기 DA에 의해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실제 시공 시 그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집하장이 지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세부계획(위치,형태)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는 수정될 수 있으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 건물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준공시 대지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관련 시설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높이,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주 및 경비실과 외부 계단, 조경시설물로 인해 일부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음.
-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보안등. 옥탑 및 조경용 조명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분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 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지상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음.
- 지상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주차대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음.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홍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저층부에 지하주차장 진입램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02동 저층부에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지붕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단지 미관을 해칠 수 있음. 또한, 지붕 상부에 낙엽 등이 쌓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단지 관리 주체에게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에 위치하여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경우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공요금으로 부과됨.
- 옥외 주민운동시설, 쓰레기수거함,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천창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 외관 디자인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여건상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승강기, 발전기, 각종 기계, 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갑작스런 관련 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조망될 수 있음.
-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음
-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입주민 편의 및 보안, 생활필수시설, 여가등을 위한 시설(CCTV,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 장애인 슬로프등)로 인한 소음 및 빛반사, 조망 저해, 프라이버시 간섭등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이로인한 설계 변경 및 설치 위치 변경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 옥외시설물, 옥외로고사인 등은 공사중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 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관련 시설물(수목·시설물·조경시설·포장·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조경시설/포장의 재질 및 위치, 식재의 수종 및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녹지구간 내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음.
- 저층 세대는 지상 소방차 이동동선,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환경권, 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 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단지 외부 사이에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이 불편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보관소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쓰레기분리보관소는 4개소 설치되며, 일부 세대 내부에서 쓰레기분리보관소가 보일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통신시설물, 공용 부 환기설비,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옥상층에 옥탑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 소방용 고가수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실 배치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창호, 가구, 기구, 마감재 및 색상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음.
- 부대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 향후 부대복리시설 등의 실외기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미관, 소음 및 냄새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동 1층 현관홀의 출입동선, 자동문의 위치, 경사로의 위치, 우편물 수취함 위치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로는 주동 구조물 하부를 이용함에 따라 기둥이 노출됨을 유의바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되며, 이에 따른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는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별 입구 인근에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이 설치되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이전요구등을 할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형태 및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근 세대에서는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인근 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핵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 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 공사시 디자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외관, 측벽, 필로티,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의 모양 및 색상, 건축물 색채디자인)을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경 로당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시공됨.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이 동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은 건물 입구 및 인접 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도로에 면한 세대는 소음 피해 및 사생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하부에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및 103동 하부에 작은도서관, 맘스카페,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경비실은 주출입구 인근에 문주통합형으로 설치예정임.
- 주민공동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 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등)으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인근에 D.A 및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 D.A와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및 비상차량 출입구에 인접하는 세대는 차량 통행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상 1층 및 지하1층 승강기 홀 크기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며 필로티와 주동 출입구 중 설치가 가능한 곳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도로, 단지 내 도로,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 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상부 등 단지내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태양광 집광판, 피로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명.빛의 산란 및 소음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지붕, 외벽등에 의장용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경관조명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 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단지와 외부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및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 구간, 재질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시야 간석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가 노출되어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및 지상주차장에 인접해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배관 및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장비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양호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음. • 추후 관계 기관 및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협의 후 브랜드 명칭 및 BI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의 상부 캐노피 설치 위치(개수)는 사업주체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람. • 부대시설 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용부위 조명 및 보안등 조경용 조명, 사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되며 입주자가 부탁하여야 함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른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 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놀이시설물의 배치 및 디자인은 분양시 홍부물과 상이할 수 있음 외관 • 단지 내 수목의 수종. 배치. 수량은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계획 • 파고라. 의자 등 휴게시설물의 형태. 배치. 면적. 색상 등은 분양시 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였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동의 입면 줄눈계획은 추후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옥상 장식탑은 시공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가 조정되고. 기둥 및 벽체가 추가될 수 있음. • 문주의 특화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 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야간조명 등에 의해 인근 세대에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함.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공간내 실면적의 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소비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창호.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시 변경 될 수 있음 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시공사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분양홍보용 CG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제공되는 품목 외 집기류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제공되는 집기류와 상이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파트니스센터 1개소),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 디었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 예정인 시설물은 향후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주민공동시설 구성 및 실 배치형태, 내부 구조, 실외기 설치 공간, 디자인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은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음. • 단지 내 CCTV,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시스템 • 단지내 설치되는 CCTV는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홈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혐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배치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102동 앞 램프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음. • 외부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 이용이 가능함. • 지하주차장은 동별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먼거리에 주차되어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 지상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합산대수로 각 동 별 주차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 배치 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멀어 불편할 수 있음. •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 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 지하주차장은 장애인주차, 경형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과 인허가청의 요구 및 기준에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음. • 지상,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2021년 사업승인기준 - 일반형 크기(2.5mX5.0m)및 확장형 크기(2.6mX5.2m)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 음)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층에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해당 위치 지상부에 발전기 배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인근동 세대쪽으로 유입될 주차장 수 있음.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비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구역이 주차대수에 포함되며,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시 해당법령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 요금, 청구방식 등은 운영방식 및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되어 설치됨.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옥외로 직통하는 계단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 출입구와 직접 연결됨.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주차구획의 개소 및 위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차량 및 이사 차량. 입주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세대에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 주차차단기가 설치되며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 설치될 수 있음.

- 대지 레벨차로 인해 지하주차장 북측 옹벽이 노출되며, 개구부가 계획되어 외기와 통하고 우천 및 우설 시 빗물이 투입될 수 있음, 해당 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와 생산 여건에 따라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현장 여건에 따라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의 부분은 상이할 수 있음. • 천장고 및 실 규격은 시공허용범위 내에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시 홍보물에 표현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전시용품이거나, 고객선택사항 계약에 따라 제공유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시 포함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입주자가 개별 소요한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은 가전사양 및 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 • 세대 내 가스계량기는 노출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다량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배관이 층 하부에 시공되는 층하배관 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위치 및 개소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본공사시 싱크대 하부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 • 세대 환기 장치 및 보일러 등 장비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세대 입벽에 환기캔이 설치되며, 세대 환기계획은 추후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물 천장 및 각실의 커튼박스의 극기는 스프링클러 및 환기 배관등의 설치로 인해 극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배수배관, 배수구 등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한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수전, 배수구의 위치 및 개소는 세대 별로 상이하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탈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설치하거나 적치 할 수 없음. • 한재 등 유사시에는 실업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아래층 세대로 대피하여야함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 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 설치. 천장에는 환기장치 장비 및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위세대 • 실외기실의 하향식 피난구 상부에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위치는 하향식피난구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시공됨. 마감재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에 따라 본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분양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단위세대 모형도를 우선으로 함. • 본 공사시 석재류 또는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현관, 주방, 거실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본 공사시 발코니에 가스배관 및 드레인,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관련 마감재의 제품사양. 위치. 수량 및 설비 수전 및 배수구의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 주방가구의 냉장고 크기, 에어컨 실외기 공간 및 다용도실의 세탁기, 김치냉장고 크기 등은 분양시점의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시점에 대형 가전이 출시될

② 일반가구 상부와 하부,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경우 반영하기 어려움.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발트인 주방가전(발트인냉장고, 발트인김치냉장고)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주방가구 상판은 상판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협소함.
- 세대 급수,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제품은 삼성전자 제품이며, 본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이 완료된 제품으로 시공업체와 제품 사양이 결정됨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됨.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됨.
- 세대 환기설비는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상부에 설치되며 환기용 배관이 천장 상부에 노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 외부 온도차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인해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함.
- 다용도실은 세탁기, 건조기 등의 사용으로 습도가 높아져 결로, 곰팡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의 수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은 세대별로 상이하고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반은 관련 기준에 따라 안방, 침실, 복도 등의 벽면, 도어 후면 등 점검에 지장이 없는 부위에 노출 설치 됨. (세대 타입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간 벽체 대부분이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 에 유의하여야 함.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함.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부 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실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 계획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 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외부 창호는 외벽 마감재에 따라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출입문의 형태. 재질.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침실 내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방의 스위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각종 가구에 전기/통신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아일랜드장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함. • 각 형별 타입에 따라 실외기실의 위치가 상이하며 이로 인한 침실 및 거실등에서 실외기소음이 발생할수 있음. • 각 동별 코어에 엘리베이터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대 현관과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수 있음. • 서비스 업데이트와 서비스제공(외부 제어 및 연동)을 위하여. 원패스, 홈넷 무인경비설비 등의 전문 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연결되어야 함. • 전용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서비스 내용) 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 및 기능은 변경 될 수 있음.) • 해당 AI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됨.(아파트 1~2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침실, 거실 등에 설치되며, 기타 층은 거실에 설치됨)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은 미관 개선을 위해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위세대 내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 일반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바닥마감 단차 높이가 인허가 및 사용성 개선 또는 시공편의상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세대를 기준으로 디자인트렌드에 맞추어 각종 유상, 무상 선택사항을 반영하여 전시하였으므로, 옵션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선택사항 및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책장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액자, 소품 및 일부 연출용 벽지등은 세대 연출 및 소비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됨. •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세대내 설치 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 되지 않음. • 동일한 세대타입이더라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단위세대 모형에 표현된 평면과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타일, 시트, 인조석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판단함. 견본주택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사향 및 설치위치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조명기구, 대기전력 차단등), 온도조절기, 선홈통,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기계환기장치, 욕실환기휀, 천장환기구,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사양은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 [k]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됨.

•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홈페이지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견본주택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스팟조명 등)은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Χ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2026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전등기 시 대지부분은 아파트 준공이후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대지부분 이전등기가 지연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잔금납부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1개소),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주민공동시설 내 집기류, 가구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됨) ※ 상기 부대복리시설 명칭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메르칼리 내진능력(MMI등급) VII-0.170a임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_ ···· _ ·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21211.15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에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수변전설비 미설치(저압수전)		
뭐기나요 서계기조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일괄소등스위치는 미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해당사항 없음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2m / 6.5m	2.7m	2.7m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통신-소방감리
상호	㈜건축사사무소 반석	㈜한백에프앤씨
금액	1,108,415,660	383,13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단위: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3-101-0003000 호	74,430,617,8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 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 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 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차입형토지신탁

- 아래 '차입형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위탁자인 호진개발(주),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시공사인 금호건설(주) 간에 체결한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호진개발(주)이고, 금호건설(주)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다하며, 한국자산신탁(주)는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동주택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한국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 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호진개발(주)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검 사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 금 반환 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호진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겸 수익자 호진개발(주)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호진개발(주)가 부담합니다.
-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매도인 겸 수탁자	위탁자	시공사	
상호	한국자산신탁(주)	호진개발(주)	금호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87-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44511-0011514	110111-0134877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주)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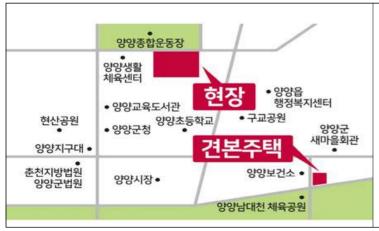
• 사업방식 : 차입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87.6%, 사용권원 12.4%(국공유지)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시 개별등기

• 사업계획승인 : 강원도 양양군 허가민원실(승인번호 : 2020-허가민원실-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견본주택(분양홍보관) 및 현장 위치 안내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87-1

• 홈페이지: http://www.yykhapt.com

• 분양 문의 : 1800-7640

• 주요 일정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서류접수:	정당 계약일:
2023.06.14.	2023.06.15.	2023.06.16.	2023.06.22.	2023.06.23.(금)	2023.07.03.(월)
(수)	(목)	(금)	(목)	~ 2023.06.26.(월)	~ 2023.07.05.(수)

- ※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견본주택 운영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